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평창군 및 화천군 기관운영감사 -

2019. 11.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2

Ⅲ. 감사결과 ····· 3

1. 감사결과 총괄 ····· 3

2.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 3

(1)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업무 부당 처리(징계) ····· 5

(2)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업무 부당 처리(징계) ····· 14

(3)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물품검사 업무 부적정(주의·통보) ·· 22

(4) 수석전시관 건축공사 기성금 지급업무 부적정(주의) ····· 28

(5) 용신천 복원사업 잔여지 보상 및 감정평가 부적정(주의·통보) ··· 32

(6) 개발부담금 결정 및 부과 업무 부적정(주의·통보) ····· 37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평창군 및 화천군은 1995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변경된 후 감사원이 한 차례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기관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사업 및 재정운용, 인허가, 계약,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평창군 및 화천군 본청과 소속기관이 2015년 1월부터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 감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2019. 4. 18.부터 같은 해 5. 24.까지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9. 11. 8.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1]

1. 일반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면적	행정구역
평창군	42,610	1,464.1	1읍 7면 191리
화천군	25,084	908.92	1읍 4면 85리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2. 조직·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청 조직	공무원 정원		
		계	본청	본청 외
평창군	1실 1단 13과, 2직속기관 1사업소 8읍·면	677	360	317
화천군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477	257	22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3.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본예산		전년 대비 예산 증가	
	2018년	2019년	금액	비율
평창군	3,544	4,043	499	14.1
화천군	2,891	3,289	398	13.8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지적사항 현황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징계 (인원)	주의	통보	현지조치
건수	15	2 (5)	4	3	6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평창군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노무비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여 2,352만여 원 상당의 기성금을 과다 지급

- 또한 8건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해 총 2억 4,278만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지 않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 개발부담금을 과소(1건, 988만여 원) 또는 과다(1건, 45만여 원) 부과

○ 화천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수리하고도 부당한 사유를 들어 당초 수리를 다시 취소하는 등 입주업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

-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 가능한 단독주택의 연면적(100㎡ 이하)을 초과(연면적 181㎡)하여 신축허가가 신청되었는데도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이를 허가

이에 대하여 평창군수에게 기성금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요구하고, 화천군수에게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들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허가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들을 각각 징계요구하는 등 총 1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화천군

조 치 기 관 화천군

내 용

1. 사건 개요

화천군은 2013. 9. 2. 관내 ㄱ단지 입주기업체인 ○○주식회사 화천지점[1](이하 "위 업체"라 한다)이 당초 업종(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제조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해 신청한 ㄱ단지 입주계약[2] 변경신청(이하 "이 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같은 해 9. 11. 「공장입지기준고시」(2008. 10. 24. 화천군 고시 제2008-434호)에 근거[3]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반려처분하였다.

이에 위 업체가 2014. 5. 27. 화천군을 상대로 이 건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8. 13. 대법원 등[4]에서 "이 건 변경신청은 당초 업종

---

1) 화천군 소재(대표이사 K), 본점은 평창군 소재

2) 위 업체는 2010. 8. 3. 화천군과 ㄱ단지 입주계약(부지면적 4,435.40㎡, 제조시설면적 1,423.07㎡, 부대시설면적 989.40㎡)을 체결한 후 2010. 8. 19.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농수로 및 도수로의 시공방법이 기존 콘크리트 용배수관 매설에서 레미콘 현장타설로 점진적으로 변경됨에 따른 공장가동률 저조로 2013. 4. 26. 화천군에 휴업신고 후 2013. 9. 2. 공장 정상화를 위해 기존 콘크리트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레미콘제조업의 업종 추가를 신청

3)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레미콘제조업은 입지제한 업종이고, 위 업체의 위치는 입지제한 기준(반경 1.5㎞ 이내에 10호 이상의 마을이 있는 경우, 간이상수도에서 반경 1.0㎞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기타 공장이 설립됨으로써 인근 지역의 주민생활·환경 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반려처분

4) 2014. 12. 5. 춘천지방법원(화천군 패소), 2015. 4. 15. 서울고등법원(화천군 패소)

과 동일한 업종분류[5]에 속하는 세부업종인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에 불과하여 화천군은 위 업체가 제출한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다른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새로운 제한기준을 추가한 화천군의 「공장입지기준고시」 규정을 근거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화천군은 2016. 10. 5. 이 건 변경신청을 수리[6]하였다.

그런데 화천군은 2016. 10. 26. 위 업체에서 이 건 변경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이하 "환경성 검토"[7]라 한다)한 결과 "폐수, 분진 등에 대한 2차 오염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과 공업용수 확보 등 세부계획에 미비점이 있어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민과 기존 입주업체의 기초적인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이 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하였다.

그로 인해 위 업체는 2016. 12. 5. 화천군을 상대로 다시 이 건 변경신청 수리 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2018. 10. 25. 대법원 등[8]에서 "선행 사건 판결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이 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는 선행 사건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 후 위 업체가 2019. 1. 15. 화천군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행사(레미콘제조

---

5) 콘크리트, 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제조업

6) 화천군은 2015. 8. 13. 대법원의 판결 후에도 이 건 변경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합동감사(실지감사기간: 2016. 9. 21.~10. 7.) 시 패소에 따른 재처분 의무 등을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6. 9. 6. 「공장입지기준고시」를 폐지하고, 2016. 10. 5. 이 건 변경신청을 수리함

7)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 고시)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도록 규정

8) 2017. 12. 1. 춘천지방법원(화천군 패소), 2018. 6. 18. 서울고등법원(화천군 패소)

업 영위)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금액 364,625,419원[9])을 제기함에 따라 화천군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우려가 있다.[10]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항, 제35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의 세부업종을 변경[11] 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군수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기업체와 농공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화천군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 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화천군 ⁂과 A는 2016. 2. 19.부터 2019. 6. 3.까지, ▨실 ◢담당 B는 2016. 7. 4.부터 2018. 8. 6.까지, ⁂과 과장 C는 2015. 8. 21.부터 2017. 2. 28.까지 각각

9) 2016. 10. 26. 이 건 변경신청 수리 취소일부터 2018. 10. 25. 대법원 판결일까지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입은 금전적 손해액, 2019. 10. 18. 당초 719,013,690원에서 364,625,419원으로 손해배상 청구금액 변경

10) 화천군은 2019. 5. 8. 이 건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다시 수리하고 같은 해 6. 13. 위 업체와 ㄱ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장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의 변경

위 관서 ▂과 농공단지 업무담당자 또는 ◧과 ▂과장의 직위에서 「화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 업무[12] 등을 담당하거나 주관 또는 총괄하였다.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2016. 10. 5.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실지감사기간: 2016. 9. 21.~10. 7.) 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이 건 변경신청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문서"를 기안한 후 ▂담당 B의 중간 결재와 과장 C의 최종 결재를 받아 수리하는 등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건 변경신청을 수리하고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A는 위 문서를 기안하면서 화천군 ◆과[13]에서 2013. 9. 4. ▂과로 환경성 검토 결과 "적합"으로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A는 2016. 10. 25. 당초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선고내용을 정리한 후 ▂담당 B와 과장 C에게 보고하여 레미콘제조업이 산업집적법에 따른 ㄱ단지 입주 제한업종이 아니고, 이 건 변경신청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는 신고대상으로 다른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A는 2016. 10. 25. 과장 C의 지시로 "ㄱ단지 입주업체 계약변경 신청에 따른 관련법 및 사업내용 검토" 문서(이하 "검토 요청문서"라 한다)를 기안

12) 「화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 "각종 단위업무 전결사항"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은 담당자가 기안하고 ▂과장이 전결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

13) 「화천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 "각종 단위업무 전결사항"에 따르면 농공단지 환경성 검토는 담당자가 기안하고 ▂과장이 전결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성 검토가 환경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이라 ▂과는 ◆과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아 처리

한 후 B의 중간 결재와 과장 C의 최종 결재를 받아 ▦사업소(상수도, 하수도 분진 등에 따른 환경성 검토), ♤면(주민의견 등) 등에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 후 A는 검토 요청문서에 대한 회신도 오기 전[14]에 과장 C로부터 "인근 지역주민[15]이 반대하므로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은 ◒담당 B가 2016. 10. 26. 문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면서 수리 취소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지 않고 "환경성 검토 결과 환경오염 등에 따른 주민과 기존 입주업체의 기초적인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어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 처리한다"는 기속력에 반하는 내용의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 취소문서"를 기안한 후 ◒담당 B의 중간 결재와 과장 C의 최종 결재를 받아 당초 정당하게 처분한 수리를 취소하였다.

나. B의 경우

위 사람은 ◒담당으로 2016. 10. 5. 담당자 A가 기안한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문서"를 중간 검토·결재하는 등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건 변경신청을 수리하고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B는 2016. 10. 25. A에게 보고를 받아 레미콘제조업은 입주 제한업종이 아니고, 이 건 변경신청은 신고대상으로 다른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는 사실과 환경성 검토 결과 "적합"으로 통보된 사실을 알고 있

14) A는 문답에서 C 과장의 지시로 어떻게든 레미콘제조업 수리를 해주지 않기 위해 먼저 수리취소를 한 후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리취소 후 접수된 관련 부서 검토 의견에도 법적으로 당초 수리를 취소하여야만 하는 사유는 없음

15) ㄱ단지가 위치한 화천군 ♤면 ♧리는 화천군수의 고향마을

었다.

그런데도 B는 2016. 10. 26. 과장 C의 지시를 받고, A에게 자신이 기속력에 반하게 작성한 내용으로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 취소문서”를 기안하도록 한 후 위 취소문서에 중간 결재하여 당초 정당하게 처분한 수리를 취소하였다.

다. C의 경우

위 사람은 ▃과장으로 2016. 10. 5. 담당자 A가 기안한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문서”를 최종 결재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건 변경신청을 수리하고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C는 2016. 10. 5. 이 건 변경신청을 수리처분하고 2주 정도가 지난 후 담당자 A와 ▃담당 B가 “ㄱ단지에 레미콘제조업체가 입주하는 데 따른 ♧리 주민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보고하자, A와 B에게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건 변경신청을 수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주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인근 지역주민이 반대하므로 이 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C는 2016. 10. 25. A로부터 레미콘제조업이 산업집적법에 따른 ㄱ단지 입주 제한업종이 아니고, 이 건 변경신청은 신고대상으로 다른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 건 변경신청 관련 환경성 검토는 2013. 9. 4. 이미 화천군 ◆과에서 “적합”으로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C는 2016. 10. 25. 이 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하기 위해 A에게 ▦사업소, ♤면 등 관련 부서에 검토 요청문서를 보내도록 지시한 후 이에 대한 회신도 오기 전[16]인 바로 다음 날인 2016. 10. 26. A와 B에게 이 건 변경신청

16) 최초 검토 요청문서는 2016. 10. 25. 오후 2시 36분에 같은 해 11. 25.까지 회신하는 것으로 발송하고도, 같은 날

수리를 취소하도록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의 지시를 받은 A가 마치 환경성 검토 결과 문제점으로 인해 이 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하는 것처럼 기속력에 반하게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 취소문서”를 기안·상신하자, 그대로 최종 결재하여 당초 정당하게 처분한 수리를 취소하였다.

그 결과 위 업체가 2016. 12. 5. 화천군을 상대로 다시 이 건 변경신청 수리 취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25. 대법원의 판결(화천군 패소[17])을 받은 후 2019. 1. 15. 정당하게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금액 364,625,419원)을 제기함에 따라 화천군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화천군은 이 건 변경신청 수리 취소 취소소송은 법원으로부터 당초 반려처분의 처분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되었으나, 이는 치열한 법리적 공방 끝에 확정된 것으로 수리 취소 당시에는 기속력에 반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모두 이 건 변경신청은 신고사항으로 위 업체가 제출한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하고, 2013. 9. 4. 이미 환경성 검

오후 5시 8분에 회신 날짜를 2016. 10. 26.로 정정하여 재발송[관련 부서 회신일자: ♤면 2016. 10. 26.(A 2016. 10. 27. 담당자 확인), ◮과 2016. 10. 26.(A 2016. 10. 27. 담당자 확인), ▣과 2016. 10. 28., ▦사업소 2016. 11. 2.]

17) 화천군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환경성 검토 결과 문제가 있어 이 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한 것이므로 선행 사건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당초 정당하게 처분한 수리를 취소하였으므로 화천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위 사람들은 2016. 10. 26. 이 건 변경신청 수리 취소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환경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상 오염방지 대책이 불충분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인식하였고, 부실한 사업계획서만을 가지고 이를 방치해서 만약에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인근 농공단지 등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탁상행정 및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변경신청은 신고사항으로 위 업체가 제출한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하고, 2010. 8. 19.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면서 배출시설(대기, 폐수, 비산먼지)에 대한 변경신고도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 9. 4. 이미 환경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위 사람들은 2016. 10. 25. 관련 부서에 검토 요청문서를 보낸 후 이에 대한 회신도 오기 전에 임의로 기속력에 반하는 사유를 들어 당초 정당하게 처분한 수리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요구 양정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B, C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C는 이 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하기 위해 A에게 관련 부서에 검토

요청문서를 보내도록 지시한 후 이에 대한 회신도 오기 전인 바로 다음 날 A와 B에게 이 건 변경신청 수리를 취소하도록 다시 지시하여 당초 정당하게 처분한 수리를 취소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화천군수**는 당초 정당하게 처리된 ㄱ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수리를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취소한 A, B, C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A, B: 경징계 이상, C: 정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화천군

조 치 기 관 화천군

내 용

1. 사건 개요

화천군은 2017. 6. 20. D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내(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연면적 181.29㎡, 지하1층/지상2층)의 신축허가 신청[1]을 받고 같은 해 6. 27. 이를 허가[2]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5항 제4호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법」 제7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 제1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원거주민[3]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하는

1) 형(E)과 어머니가 거주하던 기존 단독주택(연면적 85㎡, 지상1층)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허가를 신청

2) 2017. 12. 20. 사용승인(연면적 197.2㎡, 지하1층/지상2층)까지 완료

3)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보호구역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 이하의 농가주택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민원인이 허가 신청한 대지가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부서와 일괄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D는 1982. 5. 13. 이 건 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양평군 양평읍에 거주하고 있었고, 2017. 6. 5.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이 건 대지로 전입하여 2017. 6. 20. 단독주택 신축허가 신청 당시 원거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화천군 ◮실[4] F는 2013. 7. 8.부터, ◮실 ◎담당[5] G는 2015. 2. 10.부터 2019. 5. 24. 현재까지 각각 건축허가 업무담당자 또는 ◎담당 및 ◫담당의 직위에서 이 건 대지에 단독주택 신축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주관하였다.

가. F의 경우

위 사람은 2011. 1. 1. 지방시설(건축)서기보로 임명된 후 2011. 5. 1.부터 2013. 7. 7.까지 화천군 상서면 근무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화천군 ◮과 또는 ◮실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지의 용도구역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에 일괄협의를 요청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허가가 신청될 경우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

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구역 밖에 거주한 자, 보호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상수원관리규칙」 제2조 제4호)

4) 2017. 11. 16. ◮과에서 ◮실로 명칭 변경

5) 2018. 3. 5. ◫담당에서 ◎담당으로 직위 변경

는 ▦사업소에 일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F는 2017. 6. 20. D가 제출한 위 단독주택 신축허가 신청서의 대지조건 중 용도구역 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신청서만 확인하여도 이 건 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F는 ▦사업소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허가” 관련 일괄협의를 요청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D에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F는 ▦사업소에는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2017. 6. 22.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과 내부), 같은 해 6. 26. “정보통신시설 설치계획 적정 여부”(▨실) 문서만 작성한 다음 각각 ◫담당 G의 중간 결재와 ◮과장 H의 최종 결재를 받아 해당 부서에 협의를 요청한 후 같은 해 6. 27. “건축허가서 교부” 문서를 작성하여 ◫담당 G의 중간 결재와 ★담당 L[6]의 최종 결재를 받아 이 건 대지에 연면적 181.29㎡의 단독주택 신축을 허가하였다.

나. G의 경우

위 사람은 지방건축주사보로 임명된 후 2019. 5. 24. 현재까지 23년 동안 건축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허가가 신청될 경우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소에 일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G는 2017. 6. 22.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과 내부), 같은 해 6. 26. “정보통신시설 설치계획 적정 여부”(▨실)에 대한 협의 요청문서를

6) ◮과장 H가 출장 중인 관계로 대결

각각 중간 검토·결재하면서 위 문서들에 첨부된 신축허가 신청서만 확인하여도 이 건 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G는 화천군 건축허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업무담당자 F에게 ▦사업소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허가" 관련 일괄협의를 요청하도록 지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G는 F에게 ▦사업소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2017. 6. 27. F가 기안한 "건축허가서 교부" 문서를 중간 검토·결재하여 이 건 대지에 연면적 181.29㎡의 단독주택 신축을 허가하였다.

그 결과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자격이 없는 D에게 신축 가능 연면적(100㎡)까지 초과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화천군은 건축주 D의 노모와 E(D의 형)이 거주하던 기존 단독주택이 E의 방화[7]로 전소되어 D 노모의 주택 복구 등 생활 안정을 위해 신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1997년 D 노모의 주택을 포함한 주변 7가구 외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이 건 대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당연히 해제되었을 것이라고 간과하여 발생한 실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건 대지에 신축허가 신청한 단독주택[8]의 연면적은 181.29㎡로 방

7) E는 알코올성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함께 살던 노모와 다툰 뒤 자신이 살던 집에 방화하여 구속되었음

화로 전소된 기존 단독주택 연면적(85㎡)의 2배가 넘고,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수도법」 등의 규정에 맞게 연면적 100㎡ 이하로 신축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주택 복구 등 생활 안정을 위해 신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7가구 중 이 건을 제외한 6가구는 모두 연면적 100㎡ 이하로 건축되었고, D가 제출한 단독주택 신축허가 신청서에 이 건 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건 관련자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간과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관련자 의견 및 검토결과

이 건 관련자들은 모두 D가 기존 단독주택이 화재로 전소되어 신축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급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이 건 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관련자들은 모두 지방시설(건축)직으로 장기간(F 8년, G 23년) 근무하고 있고,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지의 용도구역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에 일괄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건축허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며, D가 제출한 단독주택 신축허가 신청서만 확인하여도 이 건 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 건 관련자들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요구 양정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F, G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8) D는 생활근거지가 ◑시인 관계로 주로 D의 노모만 거주

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F는 건축허가 업무담당자로서 2017. 6. 20. D가 신청한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기 이전 D가 2회에 걸쳐 화천읍에 신청한 후 취하한[9] 이 건 대지의 건축신고[10] 사항도 담당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신청서만 확인하여도 이 건 대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대지의 용도구역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서에 일괄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축허가 업무절차인데도 ▦사업소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허가" 관련 협의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11]에 해당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화천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가 불가능한 단독주택 신축허가가 신청되었는데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신축을 허가한 F와 G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F: 정직, G: 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9) D의 건축신고 및 취하 등 현황

신고일자	건축규모	취하일자	담당자
2017. 6. 9.	연면적 181.29㎡, 지하1층/지상1층	2017. 6. 14.	F
2017. 6. 16.	연면적 129.19㎡, 지하1층/지상1층	2017. 6. 19.	F

10)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화천군에 건축허가 신청하여야 하는데 D가 화천읍으로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여 화천군 건축허가 업무담당자인 F가 검토

11)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직무 태만의 경우 비위 정도와 상관없이 중대한 과실인 경우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물품검사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화천군
조 치 기 관	화천군
내 용	

1. 업무 개요

화천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별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납품 현황"과 같이 2016. 9. 20.부터 2018. 12. 26.까지 관내 ㄱ단지에 입주한 □□[1](대표자 M),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와 직접생산(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제품 납품을 사유로 총 10건[2]의 수의계약(합계금액 1,101,137,000원)을 체결하고, 각각 계약물품을 납품받았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

1) M이 2017. 9. 22. 주식회사 □□을 설립하기 전 운영하던 개인회사로 □□(2017. 11. 30. 폐업)과 주식회사 □□은 사실상 동일 업체임

2) □□ 4건 합계금액 268,670,000원, 주식회사 □□ 5건 합계금액 722,967,000원, 주식회사 ♡♡ 1건 109,500,000원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직접생산 확인을 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5장 제5절 및 제8절에 따르면 물품의 포장 면에는 제작자 상호와 품명을 명기하고, 납품한 물품에는 제작자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검사 관계규정 등에 따라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검사[3]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화천군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고, 구매물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부서와 **과는 각각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구매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

3)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화천군 물품관리조례」 제28조 제3항)

다.

따라서 화천군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및 물품검사를 할 때는 구매물품의 성능 및 납품된 물품의 제작자명 또는 상표 등을 확인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 후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18.~5. 24.) 중 화천군이 2016. 9. 20.부터 2018. 12. 26.까지 관내 ㄱ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직접생산제품 납품을 사유로 수의계약한 총 10건을 대상으로 납품한 물품에 표시된 상표 등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납품 현황”과 같이 □□(4건) 및 주식회사 □□(5건)은 구내방송장치,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디지털무선방송시스템 제작·설치계약, 방범용 CCTV 구매계약, ⊙⊙회관 구내방송장치 구매계약 등 총 9건의 수의계약(합계금액 991,637,000원)을 체결하였으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직접생산하지 못하고 계약물품 전부 또는 중요 계약물품을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식회사 ♡♡는 경관조명기구, 투광등기구 등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회관 무대조명설비 관급자재 구매계약(금액 109,5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직접생산하지 못하고 계약물품 전부를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화천군은 수의계약 검토나 물품검사를 하면서 구매물품의 성능이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술력 부족 등으로 직접생산할 수 없는 물품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속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결과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는 방법으로 □□ 및 주식회사 □□은 428,583,000원 상당의 차액을, 주식회사 ♡♡는 37,560,000원 상당의 차액을 각각 얻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화천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등을 숙지토록 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화천군수**는

①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생산한 제품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하고도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을 통보하고(**통보**)

②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 후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는 일이 없도록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납품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납품 현황

(단위: 천 원)

수의계약 현황					납품 현황주)		
계약업체	계약명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금액 [구매물품 계약금액(A)]	계약물품	직접생산 제품(금액)	구매제품 금액(B)	차액 (A-B)
합계 (10건)	-				-		
□□	-	-	-	무선수신기 등 7종	스피커 브래킷 (-)	무선수신기 등 6종 (-)	10,209
□□	-	-	-	세대수신 단말기 등 9종	랙캐비닛 (-)	세대수신 단말기 등 8종 (-)	10,776
□□	-	-	-	돔카메라 등 9종	없음	돔카메라 등 9종 (-)	33,072
□□	-	-	-	오디오믹서 등 28종	마이크스탠드 등 5종 (-)	오디오믹서 등 23종 (-)	74,675
㈜♡♡	-	-	-	포그머신 등 6종	없음	포그머신 등 6종 (-)	37,560
㈜□□	-	-	-	보안용 카메라 등 12종	카메라 받침대 (-)	보안용 카메라 등 11종 (-)	21,565
㈜□□	-	-	-	오디오믹서 등 12종	없음	오디오믹서 등 12종 (-)	44,440
㈜□□	-	-	-	디지털믹싱 콘솔 등 15종	스피커브래킷 (-)	디지털믹싱 콘솔 등 14종 (-)	83,731
㈜□□	-	-	-	방송수신기 등 9종	스피컷브래킷 등 2종 (-)	방송수신기 등 7종 (-)	89,935
㈜□□	-	-	-	방송수신기 등 9종	스피컷브래킷 등 2종 (-)	방송수신기 등 7종 (-)	60,180

주: 직접생산제품과 구매제품의 정확한 구매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계약금액을 적용함

자료: 화천군 제출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수석전시관 건축공사 노무비 지급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평창군

조 치 기 관 평창군

내 용

1. 업무 개요

평창군은 2016. 11. 23.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계약(계약금액 2,246,736,400원)한 "노람뜰 수석테마공원 수석전시관 건립 건축공사"(이하 "전시관 공사"라 한다)에 같은 해 11. 29.「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9절 제7호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1)]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 합의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

1)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은 후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평창군과 ♬♬이 맺은「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2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평창군은 ♬♬에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지급하되, 노무비는 ♬♬이 모든 근로자에게 전월 지급한 내역과 당월 지급할 내역을 작성하여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다음 월에 청구)로 청구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창군 계약담당자는 ♬♬로부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청구받으면 기성검사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하여 기성금이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은 2017. 6. 27. 착공일(2016. 11. 29.)부터 2017. 6. 19.까지의 전시관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받고, 2017. 7. 5. 평창군에 제1회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기성검사 완료일인 2017. 6. 19.까지의 노무비(39,413,000원)가 아닌 2017년 5월분[2] 노무비(15,884,000원)만 공제하고 기성금 372,609,000원[3]을 청구한 후 다음 날

2) ♬♬은 2017. 5. 13.부터 공사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2017년 5월분 노무비를 최초로 제1회 기성금과 구분하여 청구

3) ♬♬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에 따라 224,460,500원은 평창군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148,148,500원을 ♬♬에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함

5월분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도 평창군 ⁂과 N은 2017. 7. 5. ♬♬로 하여금 기성검사 완료일인 2017. 6. 19.까지의 노무비(39,413,000원) 전액을 공제하여 제1회 기성금을 다시 청구하도록 하지 않고, ♬♬을 상대자로 한 공사대금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가 평창군에 통지·접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기성금 372,609,000원 중 하도급업체 직접 지급분 224,460,500원을 제외한 ♬♬ 귀속분 148,148,500원을 경리담당 R의 중간 결재와 ⁂과장 P의 최종 결재를 받아 평창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일시보관하고, 같은 해 7. 7. ♬♬에 기성금에서 공제한 5월분 노무비 15,884,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N은 2017. 7. 13. ♬♬이 6월분[4] 노무비 30,305,000원을 청구하자, 같은 해 6. 1.부터 6. 19.까지의 노무비 23,529,000원은 일시보관하고 있던 세입세출 외 현금(♬♬의 기성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다음 날 경리담당 R과 ⁂과장 P의 결재를 받아 30,305,000원 전액을 전시관 공사 예산에서 지급한 후 같은 해 9. 7.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일시보관하고 있던 ♬♬의 기성금 148,148,500원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공탁하였다.

그 결과 평창군은 2017. 12. 1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 등[5]의 사유로 전시관 공사 계약을 해지하였고, ♬♬은 2018. 6. 30. 폐업[6]하였으며 보유한 재산도 없어 ♬♬에 과다 지급한 기성금 23,529,000원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

---

4) 6월분 노무비는 2017. 6. 1.부터 기성검사 완료일인 6. 19.까지의 노무비(23,529,000원)와 기성검사 완료일 이후인 6. 20.부터 6. 30.까지의 노무비(6,776,000원)로 구성되어 있음

5) 평창군은 2017. 8. 11. 자재반입 및 장비투입 등 작업공정이 ♬♬의 자금난과 현장대리인 부재 등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전시관 공사를 중지

6) ♬♬은 2018. 11. 2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음

관계기관 의견 평창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부서의 인력을 늘리고 직원 대상 회계교육을 강화하여 회계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평창군수**는

① 앞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노무비를 공제하지 않아 기성금이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용신천 복원사업 잔여지 보상 및 감정평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① 화천군 ②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① 화천군 ②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 개요

화천군은 2015. 4. 16. 납품받은 실시설계용역계약[1] 성과품에 따라 같은 해 6. 18. 주식회사 ㅍㅍ건설과 “2015년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용신천 복원)사업”[2] (이하 “용신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공사계약(계약금액 544,125,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4. 위 업체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화천군은 2015. 7. 9.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사유로 공사를 중지하고, 같은 해 7. 24. 전체 편입 사유지 11필지(소유자 4명, 면적 1,913㎡) 중 [표]와 같이 S 소유 4필지[면적 923㎡(잔여지 701㎡ 포함, 지장물(주택, 창고, 고물상 등)]만 손실보상한 후 사업비 집행기간이 만료[3]될 때까지도 나머지 7필지(소유자 3명, 면적 990㎡)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8. 4. 3. 용신천 복원사업을 포기[4]하였다.

---

1) 계약일자: 2015. 2. 13., 계약금액: 34,987,000원, 계약업체: 주식회사 ****

2) 주택 침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배수가 불량한 용신천(소하천) 복개시설을 철거(길이 81m)하고 친환경 옹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사업비 1,000,000,000원(국비 500,000,000원, 도비 100,000,000원, 군비 400,000,000원)]

3) 사업비를 2015. 12. 31. 명시이월하고, 2016. 12. 31. 사고이월하여 2017. 12. 31.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여야 했음

4) 화천군은 2018. 4. 9.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해 11. 2. 강원도에 용신천 복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

[표] S 소유 4필지 손실보상 현황

(단위: ㎡, 원)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보상액			
		대장(보상)	편입	잔여지	합계	토지	지장물	이전비(영업손실)
합계	4필지	923	222	701	400,630,950	143,661,500	202,385,070	54,584,380
화천읍 신읍리	- (전)	29	29	0	2,856,500	2,856,500		
	- (대)	487	45	442	174,768,020	76,702,500	63,115,520	(34,950,000)
	- (대)	396	148	248	221,273,930	62,370,000	139,269,550	19,634,380
	- (대)	11	0	11	1,732,500	1,732,500		

자료: 화천군 제출자료

2.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토지수용 업무편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잔여지가 대지인 경우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주거지역의 경우 60㎡ 이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 이하, 삼각형은 한 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할 때에만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를 받아 손실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S 소유 4필지의 총면적 923㎡ 중 용신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222㎡를 제외한 나머지 701㎡의 토지는 모두 대지(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잔여지 확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화천군은 용신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면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잔여지까지 포함하여 손실보상해 주는 일이

이자 355,758,550원(국비 297,084,000원, 도비 58,674,550원)을 반납함

없도록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화천군은 2015. 3. 27. 용신천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S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공사 구간에 편입된다는 사유로 나머지 잔여지까지 손실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자, 같은 해 4. 16. S 소유 4필지 전체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5]하여 실시설계용역계약 성과품을 납품받았다.

그 후 화천군은 2015. 5. 4. 주식회사 ☏☏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평가법인에 각각 용신천 복원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11필지, 면적 1,913㎡)하여 같은 해 6. 16. 그 결과를 회보받고, 같은 해 7. 24. S에게 당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잔여지까지 포함하여 400,630,95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3. 영업손실금 감정평가 의뢰에 관한 사항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관련 [별표 4]에 따르면 고물상 용도의 건축물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

5) 설계도(용지 및 지장물도)와 용지 및 지장물 조서에 포함

당하지 않는다.

또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S가 고물상 영업[6]을 하고 있던 관내의 대지는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S의 고물상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되지 않아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용신천 복원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평가법인과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S의 고물상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보상 평가액에 영업손실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M과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N은 2015. 5. 29. 화천군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화천군 담당자가 S의 고물상 영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평가액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구두 요청하였다는 사유[7]로 위 고물상 영업이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해 6. 16. 위 고물상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평가액(AM

6)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시·군지역에서 사업장 규모가 2,000㎡ 미만인 고물상은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S는 2010. 11. 3. 춘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대지는 2010. 8. 20.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

7) 국토교통부는 화천군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임

34,600,000원, AN 35,3000,000원)까지 포함한 감정평가서를 화천군으로 각각 회보하였다.

그 결과 화천군은 2015. 7. 24. S에게 34,950,000원[8]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천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화천군수는 앞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잔여지를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식회사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M과 주식회사 ♨♨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AN에 대해 "2015년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용신천복원)사업"의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위반하였는지 조사한 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8) (34,600,000원+35,300,000원)÷2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개발부담금 결정 및 부과 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평창군

조 치 기 관 평창군

내 용

1. 업무 개요

평창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면서 [표]와 같이 2015. 1. 1.부터 2019. 3. 31. 사이에 준공 인가한 총 125건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13건은 개발이익이 있는 것으로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합계 177,607,190원)하였고, 70건은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42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및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현황(2015년~2019년 3월 말 현재)

(단위: 건)

구분	계(부과대상사업)	부과	미부과 (개발이익 없음)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미조치
2015. 1. 1.~2018. 6. 26.	125	12	56	42
2018. 6. 27.~2019. 3. 31.주)		1	14	

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 개정(2018. 6. 27. 시행)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 검증 대상
자료: 평창군 제출자료

2.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미조치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외의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1,650㎡ 이상[1]의 토지에서 실시되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되,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토지의 부과 종료시점[2]지가에서 부과 개시시점[3]지가・부과대상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개발이익)에 부담률(0.2 또는 0.25)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군수는 개발사업 인가 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납부의무자로부터 준공 인가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6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에 대해 예정 통지하고 부과 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4]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조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제출기한(개발사업이 준공 인가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이 25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발비용이 발생

1)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외의 도시지역의 경우 1,500㎡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2,500㎡ 이상(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

2)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

3)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4)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예정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창군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인허가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을 고지하고,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준공을 인가받고도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예정 통지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평창군 ㅂ과 및 ◔과[5]는 2015. 1. 1.부터 2019. 3. 31.까지 준공 인가한 총 125건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7건은 개발사업을 인허가하면서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35건은 개발사업 준공이 인가된 날로부터 최대 4년이 지나도록 납무의무자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예정 통지하지 않는 등 총 42건에 대해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18.~5. 24.) 중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42건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6]한 결과 [별표 1] “개발이익 발생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현황”과 같이 관내 4필지(면적 6,514㎡) 개발사업(숙박시설)의 경우 111,477,820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준공 인가일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지 않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총 8건의 납부의무자에게

5)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는 당초 ㅂ과에서 담당하였으나, 2018. 11. 19. ◔과가 ㅂ과에서 분리·신설되면서 ◔과로 이관함

6)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함

개발부담금 계 242,781,160원을 결정·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종료시점지가 적정성에 대한 검증 누락

가. 관계 법령(판단기준)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 1.부터 부과 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2017. 12. 26.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2018. 6. 27. 시행)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7]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창군은 2018. 6. 27. 이후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평창군 ♭과 및 ◔과는 2018. 6. 27.부터 2019. 3. 31.까지 총 15건의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면서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7)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도록 개정함

을 받지 않고, 14건은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1건은 597,230원의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감정평가법인[8]에 의뢰하여 위 15건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를 검증한 결과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 검증 결과”와 같이 이 중 13건은 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건은 평창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고저・형상・도로접면 및 거리 등 토지 특성을 실제와 다르게 반영하여 개발부담금 9,880,990원이 부과되지 않거나, 453,620원 상당 과다하게 부과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평창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감사로 확인한 42건의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미조치 사업에 대해서는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개발부담금을 잘못 부과한 2건에 대해서는 정정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평창군수**는

①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지 않은 42건은 해당 납부의무자로부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미부과 또는 과다 부과한 2건은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의 지가를 검증하지 아니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8)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 강원지사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에 각각 의뢰함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부담금 결정 및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개발이익 발생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현황

(단위: ㎡, 일, 원)

연번	개발사업 시행자	토지 현황	위치 / 면적	개발 목적	허가일자 / 준공인가일자	고지일자 / 부과시점 경과일수주)	개발비용	개발이익	개발부담금
계	총 8건						-	-	242,781,160
1	AP	▨면 ◔리 외 2필지	4,497	다가구 주택	2013. 10. 4. / 2017. 4. 10.	2015. 12. 11. / 721	180,104,850	28,216,476	7,054,110
2	AQ 외 3인	▨면 ◣리 외 5필지	3,310	다가구 주택	2014. 4. 29. / 2017. 8. 4.	2014. 9. 12. / 605	132,565,500	385,112,272	96,278,060
3	AR	◕면 ◗리 외 1필지	4,990	2종근생, 단독주택	2015. 2. 25. / 2017. 7. 14.	2015. 3. 11. / 626	211,639,000	11,687,581	2,921,890
4	AS	◗읍 ◪리 외 1필지	1,107	단독주택	2015. 10. 22. / 2017. 9. 4.	2015. 10. 28. / 574	34,981,200	22,859,968	5,714,990
5	▤ 영농조합 법인	◥면 ◤리 외 8필지	3,426.7	단독주택	2015. 12. 4. / 2018. 4. 10.	2015. 12. 24. / 356	137,239,335	33,101,910	8,275,470
6	AT	▨면 ◖리	718	단독주택	2016. 5. 18. / 2017. 3. 8.	미고지 / 754	28,755,900	2,239,040	559,760
7	AU 외 1인	◥면 ◩리 외 4필지	6,514	숙박시설	2016. 9. 19. / 2016. 11. 18.	2016. 9. 5. / 864	189,371,540	445,911,293	111,477,820
8	AV	◗읍 ◭리 외 1필지	1,738	운동시설 등	2018. 8. 24. / 2018. 12. 6.	미고지 / 116	51,635,980	41,996,251	10,499,060

주: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2019. 3. 31.까지의 일수임

자료: 평창군 제출자료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 검증 결과

(단위: ㎡, 원, 원/㎡)

연번	개발사업 시행자	토지 소재지	면적	개발목적	준공인가일자 / 통보일자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종료시점지가		재산정 개발부담금주)
							평창군	검증	
1	♩♩㈜	◥면 ◩리 외 26필지	60,959	숙박시설	2018. 10. 30. / 2019. 2. 14.	미부과	142,800	142,800	개발이익 없음
2	BA	◗읍 ▼리 외 1필지	3,686	태양광발전	2019. 1. 15. / 2019. 1. 17.	미부과	8,340	8,340	개발이익 없음
3	BB	◗읍 ▼리	4,559	태양광발전	2017 .9. 5. / 2019. 1. 17.	미부과	8,340	8,340	개발이익 없음
4	BC	◥면 ▶리 외 3필지	2,615	2종근생	2018. 7. 18. / 2019. 1. 17.	미부과	47,900 22,100	47,900 22,100	개발이익 없음
5	BD	◁면 ◇리 외 1필지	3,335	태양광발전	2018. 1. 10. / 2019. 1. 17.	미부과	25,100 6,100	25,100 6,100	개발이익 없음
6	BE	△면 ◘리 외 1필지	2,499	태양광발전	2018. 4. 16. / 2019. 1. 17.	미부과	12,500 3,000	12,500 3,000	개발이익 없음
7	㈜☆☆	◥면 ◩리 외 1필지	3,447	숙박시설	2018. 8. 14. / 2019. 1. 17.	미부과	138,000	138,000	개발이익 없음
8	BF 외 1인	◥면 ◩리 외 5필지	2,245	단독주택	2018. 3. 1. / 2018. 9. 11.	부과 (597,230)	78,200	78,200 77,500 76,000	143,610
9	㈜&&	▲면 ■리 외 1필지	3,207	단독주택	2018. 2. 6. / 2018. 7. 30.	미부과	32,500 10,200	32,500 10,200	개발이익 없음
10	BG	◁면 ◇리 외 1필지	2,466	단독주택	2017. 9. 14. / 2018. 7. 30.	미부과	27,000	27,000	개발이익 없음
11	◀◀ 영농조합	◗읍 ◓리	3,353	2종근생	2018. 1. 5. / 2018. 7. 30.	미부과	52,300	50,200	개발이익 없음
12	BH 외 1인	◥면 ◩리 외 1필지	1,709	1종근생, 2종근생	2018. 1. 3. / 2018. 7. 30.	미부과	200,800	240,700	9,880,990
13	BI	◕면 ◬리 외 1필지	1,624	단독주택	2018. 5. 11. / 2018. 7. 30.	미부과	37,500	39,000	개발이익 없음
14	BJ	◕면 ◬리 외 1필지	1,104	1종근린	2018. 5. 10. / 2018. 7. 30.	미부과	58,800	58,800	개발이익 없음
15	BK	◕면 ◬리 외 1필지	2,077	단독주택	2018. 4. 19. / 2018. 7. 30.	미부과	37,500	35,300	개발이익 없음

주: 연번 8, 11, 12, 13, 15번 개발사업은 평창군 산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와 검증 종료시점지가에 차이가 있으나 8번과 12번을 제외하고는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여도 개발이익은 없음

자료: 평창군 제출자료